(별첨)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2015. 10. 29.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목치

I. 추진 배경 ···································
Ⅱ. 주요 건전성 규제 현황 2
Ⅲ.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4
1. 건전성 규제 국제동향 4
2.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7
IV. 개선방안 12
1. 국제정합성 제고 12
2. 건전성 규제의 정비 16
<붙임> 건전성 규제 세부 내용 20

│. 추진배경

- □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 4개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추진
-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규제는 **영업행위 규제 개선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접근
 -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영업행위 → 폐지 또는 완화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6.15) 후 업권별 분과작업반^{*}을 중심으로 유형별 규제를 검토
 - *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4개 분과별로 협회·연구원·금융 당국이 공동작업
- **금융규제 전체**(1,064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
-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 54건을 검토
- □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의 **근간**이 되므로 **국제적 정합성**, 권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건 중 9건을 강화 하고 26건은 합리화
- ➡ 이중 **중요 사항** 위주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마련

Ⅲ. 주요 건전성 규제 현황

1 자본적정성 규제

- □ 금융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 **흡수**를 위해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 은행과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NCR), 여전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을 적용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 금융회사의 자산을 부실가능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
- 부실가능성은 ①FLC*, ②연체기간, ③부도여부**에 따라 판단
- *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차주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
- ** 부도, 청산·파산, 폐업중인 경우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

3 대손충당금 적립

- □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최저적립비율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 o 다만, K-IFRS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자산의 중요성**에 따라 **가치손상여부**를 평가하여 **발생손실**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 *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비카드 상장사(저축은행은 '16년 도입예정)
- o **K-IFRS**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최저적립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자본계정)으로 적립

4 레버리지비율

- □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은행) 난외·난내 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을 일정수준(예: 3%) 이상 보유 (*18년 도입 예정)
- (금융투자) 난내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로 제한
 - * ① 10개사가 우선 도입 ('15년 신NCR 조기적용시 레버리지비율도 도입)
 - ② '16년부터 全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여전) 난내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 * 신용카드업자 : 자기자본의 6배 할부금융업 · 시설대여업 · 신기술사업금융업 : 자기자본의 10배

5 예대율

- □ 위험자산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예수금 한도** 이내로 **제한**
- (은행)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100% 이하
 - *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은행(산업·수출입·기업·수협 제외)
- o (상호금융) 원화예탁금·적금·출자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80% 이하

6 법정적립금

- □ 과도한 배당억제 및 적정 자본 유지를 위해 당해연도 **이익규모의** 10%를 내부유보
- o 다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및 여전사는 별도 법정적립금 제도가 없어 상법^{*}을 준용
 -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Ⅲ.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1 건전성 규제 국제동향

가. 은행

- □ (자본규제) 바젤위원회는 '13년부터 자본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바젤Ⅲ 이행을 권고
- '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0~2.5%),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1%)**을 단계적으로 부과
 -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적립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 o '18년부터 레버리지비율 도입 (최저규제수준은 '17년 결정)
- □ (유동성 규제) 중장기 유동성지표인 NSFR 기준서가 확정(*15.6월)됨에 따라 '18년부터 시행 예정
- o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1년 기준 중장기 구조적 유동성비율

- * 부채와 자본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조달자금
- ** 자산 중 향후 1년 동안 현금화되기 어려워 1년 이상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 (회생·정리계획)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방안 마련
- 회생계획(Recovery Plan) : 금융회사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수립한 경영정상화 계획
- **정리계획**(Resolution Plan) : 금융회사 또는 정리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 □ (이행 모니터링) IMF·FSB·바젤위원회 등 국제 감독기구는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
 - * '13년중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금융부문평가**(FSAP)를 실시한데 이어, '15.12월부터 바젤위원회가 **바젤규제정합성평가**(RCAP)를 실시할 예정

나. 보험

- □ (자본적정성 기준) IAIS*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ORSA)** 도입을 권고
 -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은행권의 BCBS와 유사하게 국제 보험감독기준을 제정하는 감독자 협의체
 - ** <u>O</u>wn <u>Risk</u> and <u>Solvency Assessment</u>: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토록 하는 감독제도(은행권의 바젤II 필라2와 유사)
 - 또한, '13년 IAIS는 국제적 보험그룹에 적용하기 위한 연결기준
 국제 보험자본기준(ICS) 도입계획*을 발표
 - *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 은행권의 바젤기준과 유사한 보험권의 통일된 자본기준으로, '17.6월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년 시행 예정
- □ (보험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6년 중 보험부채 국제회계 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년부터 시행 예정
 - IFRS4 2단계 시행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법에서 시가법 으로 전환
- □ (국가별 동향) EU는 리스크 측정방식을 정교화하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그룹기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 를 '16.1월부터 시행할 예정
 - o 미국도 '08.6월부터 지급여력제도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자기자본 규제 선진화를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다. 금융투자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중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거나 양적 한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 o (EU)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은 중권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
- 바젤Ⅲ 규제를 반영한 **CRD*** **IV**('13년 시행)를 은행 등 **여신금융** 기관(credit institutions)과 **투자회사**(investment firms)에 모두 적용
- *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필요자본지침)
-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레버리지비율** 적용
- □ EU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저 유지자본제도와 수탁고 대비 필요 자본제도를 적용하나 미국은 건전성 규제가 없음

라. 금융그룹 통합 감독

- □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실시 중
 - * ① 금융그룹 내 출자관계 등 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excessive gearing)
 - ②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적발 곤란
 - ③ 대형 금융그룹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
- o (EU) EU 회원국은 '05년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
- * '02년 EU의회 감독지침 제정 → '05년부터 회원국 법제화하여 시행
- (일본) '06년부터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제정하여 감독 당국이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강구

2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가. 은행

- □ 국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바젤위원회 등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 □ (예대율 규제) 선진국은 직접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하지 않아 국제기준보다 과도하다는 지적
- 다만, 동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존치 필요
- □ (이익준비금) 바젤Ⅲ 자본규제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중복규제에 해당
 - * 은행법(§40)에서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상법(자본금의 50%)보다 높은 수준
- □ (바젤 필라2) 바젤Ⅱ 필라2^{*}에 따라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
 - * ① 필라1: 최저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규제
 - ②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ment Program)을 마련하고, 감독당국은 동 시스템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부과 등의 감독조치
 - ③ 필라3: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여 시장규율 강화
- o 다만,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미흡 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는 미시행
- ※ IMF는 '14.5월 우리나라에 대한 FSAP 평가에서 필라2 제도를 단기간 내 이행토록 권고

나. 보험

ี ′08५	현 금	융위기	이후	연	결기준	RBC,	부채의	시기	가평가	및	자체
위험	평가	체계	도입	등	건전성	규제기	강화됨	실에	따라	지급	구여력
확충	• 0]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됨						

- □ (연결기준 RBC) 국내 RBC는 개별 보험회사 단위로 산출하고 있어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 평가 곤란
- □ (시기평기) 일부 투자자산 및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가평가로 전환 필요
- □ (자체 위험평가체계) IAIS의 권고에 따라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방안 마련 필요

IAIS 권고사항과 국내 RBC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 분	ICS(또는 IAIS 권고)	국내 RBC제도
측정단위	연결 기준	개별보험회사 기준
가치평가방법	• 투자자산: <u>모두 공정가치</u> • 보험부채: <u>공정가치</u>	• 투자자산 만기보유유기증권, 대출채권 <u>상각후 원기평가</u> • 보험부채: <u>원가평가</u>
자체위험평가 체계 (ORSA)	• 보험회사 자체적인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	• 없음

- □ (차입제한) 은행 등 타 권역에 비해 자금차입 제한이 엄격*하여 신종 자본증권 등을 통한 자본확충** 곤란
 - * ①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②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경우에만 차입을 허용
- '20년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할 경우고금리·확정형 계약이 많은 일부 생보사의 자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다. 금융투자

- □ 은행·보험권과 달리 **글로벌 건전성 기준이 없어** 나라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상이**
- o 우리나라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NCR, 레버리지비율 등 독자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기준은 정비가 필요
- □ (NC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작존만기 3개월 ~ 1년 구가에서 급격하게 상승*
 - * 신용등급 AAA~AA⁻ 일반법인 기준 위험값(잔존만기) 1.6%(3개월내) → 11.6%(6개월내) → 21.6%(9개월내) → 31.6%(12개월내)
- 또한,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NCR 위험값 관련 건의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별도 검토 필요
 - * ①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신용 위험액 산정 면제
 - ②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 확대
 - ③ 별도 예치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치금 등에 대한 위험값 적용 한리화 등
- ☐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이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미국 NCR규제와는 비슷한 수준*임
 - * 미국 NCR(Net Capital Rule) 규제는 총부채 대비 순자본 비율을 규제하며, 산정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국내기준 환산시 1,000%~1,500% 범위로 우리나라 레버리지비율 기준(1,100~1,300%)과 비슷한 수준임
- ☐ (전문사모 운용사*) 공모편드 운용사와 동일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
 - *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15.10월부터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 가능

- **전문사모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음**
 - * 적격투자자 = 전문투자자, 1억원 이상 투자자 등
 - ** 유사하게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업 투자자문사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미적용
- o 해외의 경우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등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참고> 외국의 사모편드 운용사 건전성 감독

- ◇ (미국) 운용자산(AUM) 100백만USD 이상인 사모편드 운용사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별도의 건전성 규제는 없음
- ♦ (유럽)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없이 최저자기자본, 위험 대비자기자본규제를 위반한 경우 인가・등록취소 등으로 조치

라. 비은행

- □ 비은행 권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벌 건전성 기준은 없음
- 다만, IMF 등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 ☐ (저축은행)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소규모 지방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큼에도 건전성 기준은 낮음
- o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나, 저축은행은 7%를 적용
- o 저축은행의 경우 FLC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보다 완화
- * 은행은 연체기간이 1개월 3개월 여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2개월 4개월 기준으로 분류

-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하여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신협의 법정적립금 제도는 농·수·산림 조합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
- o **예대율이 80**% *임에 따라 **예적금의 2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앙회 예치 등으로 유용
- * 은행은 100%이며, 저축은행은 제한 없음
- **신협**은 **이익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까지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이익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까지 적립하며, **손실 보전 목적**으로 사용 가능

마. 금융그룹 통합감독

- □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켜왔으나 우리는 업권별 감독에 치중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실정에 맞는 금
 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 '14년 FSAP 지적: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연결감독이 국제기준에 미흡
- □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금융그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감독체계는 업권 중심**으로 통합감독이 미진
- o 금융지주그룹 外 여타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그룹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 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

Ⅳ. 개선방안

─ <기본방향>

- 바젤위원회, IAIS 등 국제 감독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도입하고, 글로벌 건전성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전성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23건)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12건)

1 국제정합성 제고

가. 은행

-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15년부터 은행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18년까지 도입 예정
- o '17년 중 바젤위원회가 레버리지비율 최저규제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하여 최저기준을 정할 계획
- □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및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16년 도입 예정
- o D-SIB 선정을 위해 11개 지표로 은행별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할 계획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측정방식의 유효성을 검토
- 신용/GDP갭 등을 감안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및
 부과수준(2.5%이내)을 매분기 결정
 -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 □ 회생정리계획(RRP)은 '17년말 도입을 목표로 방안 마련 중
- 국제기준에 따라 감독당국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권한을 부여(법무부 협의 필요)
 - * bail-in : 금융회사 부실발생시 정리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bail-out)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o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 합의한 대로 FSB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 시행근거, 정리계획 작성주체 선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TF를 통해 연내 확정 예정
- □ **바젤 필라2 규제**는 감독당국의 **추가자본 부과 조치** 등을 보완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 o 리스크관리 수준이 일정등급 이하인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리스크관리 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감독 강화

< 은행의 글로벌 규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은행 손실흡수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						
■ 레버리지비율 규제	산출방식 세칙개정 완료 '15년부터 공시 실시	'18년부터 최저비율규제 도입(경영지도비율 포함)				
■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정개정 완료	'16년부터 시행				
■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매분기 판단				
■ 시스템적 중요 은행 (D-SIB) 규제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매년 선정				
■ LCR(단기 유동성)	'15.1월부터 시행	-				
■ NSFR(장기 유동성)	바젤기준서 번역 및 모니터링	'18년부터 시행예정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 감독 강화	Y				
■ 회생정리계획(RRP)	도입방안 마련중	`17년말까지 도입(예정)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					
■ 바젤 필라2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부터 시행				

나. 보험

- □ 연결 RBC제도는 '16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추진
-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IAIS 권고를 반영하여 '16년까지 규정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17년 도입 추진
-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 체계** 및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평가하여 **요구자본**에 반영
- □ 2020년 예정인 IFRS4 2단계 시행을 대비하여 주요국 준비상황 등에 맞춰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정비 추진**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 및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 정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o '16년 상반기중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화충 노력 강화 유도
- □ BIS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 등을 정비
-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용화사율**을 적용하여 신용공여 금액에 **합사**
 - *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난외항목을 신용공여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손충당금 미적립 및 RBC상 신용리스크 미산출

<보험의 글로벌 규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목표)
■ 연결RBC 제도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
■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7년 시행
■ 자본확충방안 추진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검토)
 난외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

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 □ 금융그룹 감독은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하여
- *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통합감독 시행중
- 우선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적인 그룹 통합감독** 추진
- o 모범규준 시행 후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 추진
- □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시행
 - *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은 EU 등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산업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11월 中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
- □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은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통해 그룹내 자본의 이중계상(double gearing)을 방지하는 한편,
-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
- □ 세미나 개최(11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마련
- o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년 중 「모범규준」 제정 추진

2 건전성 규제 정비

<요 약>

- ①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 (은행) 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규제
- o (보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제한 규제
- o (**금융투자**)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 이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
- ②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
- o (비욘행) 저축은행·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신협의 법정적립금 규제

합리화	강화
• 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 • 이익준비금 규제	-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한	-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 저축은행·여전사(일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신협의 법정적립금 규제
	• 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 • 이익준비금 규제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한 •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위험값 •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가. 은행

- □ (예대율) 당분간 예대율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 정비
 - * '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방안 마련 시 예대율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 예대율규제를 일부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예수금 산정시 포함
- *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급격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차입금은 제외
- □ (이익준비금)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으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이익준비금 규제는 폐지 (은행법 개정 사항)

나. 보험

- ☐ (후순위채 발행)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
- □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권보다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 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
- 또한, 신종자본증권의 RBC 지급여력 산정 시, 기본자본 인정비율을 상향(15%→25%)

다. 금융투자

- □ (NC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 차등을 **완화***
 - * 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에 대해 현행 3개월 수준의 위험값 적용 등
- o 또한, NCR 위험값 산정 관련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 (전문사모 운용사)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등록제로 운영하는 **전업 투자자문사**와 같이 최소영업자본액 및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유지자본***으로 **관리**
 - * 투자자문사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시 등록 취소 가능

라. 비은행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구 분	저축은행	여전사 (일반대출)
연	정 상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체	요 주 의	4개월 미만	6개월 미만
기 간	고정이하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은행·상호 금융 ·보험·금투
_	1개월 미만
\Rightarrow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o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FLC 기준을 도입 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미래 상화능력을 고려하도록 개선

- o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 ※ '14.5월 IMF 등은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일치시키도록 권고
-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기준을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 여부 검토
- **은행(100%)**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고, **구조적**으로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
- o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나, 대출 증가세 억제보다 수신 확대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
 - * '09년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한도 상향(2,000-3,000만원) 이후 수신 및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13.7월 도입
- □ (신협 법정적립금)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이상 적립(현행 10%)토록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신협법 개정 필요)
 - *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농·수·산림조합과 동일**)
- o 신협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유보육 제고 필요
 -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에 불과 (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

붙임

건전성 규제 세부 내용

1 은행

가. BIS비율

- □ **자본**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하는 지표로, **연결기준**으로 산출
- **총자본비율 8%, 기본자뵨비율 6%, 보통주자뵨비율 4.5%** 이상 (기 도입)
- 이 의 는 별도로 자본보전 완충자본(2.5%) 및 경기대응 완충
 자본(최대 2.5%)을 추가적립 ('16~'19년중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에 대해서는 **1%의 추가 자본을 부과** ('16~'19년중 단계적으로 도입)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구분	최저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포함	경기대응 완충자본 포함
보통주자본비율	4.5%	7%	최대 9.5%
기본자본비율	6%	8.5%	최대 11%
총자본비율	8%	10.5%	최대 13%

BIS비율 =	자기자본	- x 100%
	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X 100%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 **30일간의 순현금유출**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보유 (*15년 도입)
 - * 일반은행은 80%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19년부터 100%를 적용

LCR	_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	≥ 100%
LCK	-	30일간 순현금유출	2 100%

*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채, 중앙은행 채권 등

다. 예대율

- □ 시장성 수신에 의존한 과도한 자산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예수금 범위 이내로 제한^{*} (12.7월 도입)
- '14.12월 중소기업 및 서민자금 지원,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
- *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은행(산업·수출입·기업·수현 제외)
- ** 대출에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 및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 예금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예금 1%內)를 포함

	=	원화대출금(월평잔)	- ≤ 100%
예대율		원화예수금(월평잔)	

2 금융투자

가. 순자본비율(NCR)

- □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연결기준**으로 산출 (*14.11월 개편)
- ※ 新NCR제도는 '15.1월부터 선택적으로 조기적용되어, '15.8월말 현재 총 10개사가 도입 ('16.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나. 최소영업자본액

- □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을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으로 유지 (금액중심 규제)
-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자산운용시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펀드)이 분리**되어 있어 회사의 부실과 투자자 손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음으로 **NCR**의 **적용을 배제**

다. 레버리지비율

- □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내로 제한
- '16년부터 全 중권사 및 선물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 * NH 등 10개사가 우선 도입('15년 신NCB 조기적용시 레버리지비율도 도입)

게비리되네요 _	총자산 [*] (부채+자기자본)	– x 100%
레버리지비율 =	~ 자기자본	X 100%

*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종금자산, 대손준비금, 일시계상미수금을 차감

3 보험사

가. 지급여력제도(RBC)

- □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자본)을 보유
- 미국·일본 사례를 토대로 **RBC**(Risk-Based Capital) **방식으로 개편** (2년간 기존제도와 병행산출, '11년 본격 시행)

TI크셔큠비오/DDC비오\ _	가용자본 [*]	— ≥ 100 %
지급여력비율(RBC비율) =	요구자본 ^{**}	— 2 100 %

* 가용자본 :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 요구자본: 보험·신용·시장·금리·운용리스크 규모

나. 자금차입제한

- □ 보험계약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자금 차입을 제한
- o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
- * 예)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사채·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후순위차입 등

4 비은행

가. 저축은행

- □ (BIS비율) 자본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여결기준으로 산출
- o 과거 5% 수준이었으나, '12.7월 이후 **자산규모에 따라 7%로 단계적으로 상향**
- o 다만, 은행과 달리 신용위험가중자산만을 기준으로 산출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7 8	~ 12.7.1.	자산 2조원 C	l상	자산2조원 미만		
一	~ 12.7.1.	12.7월~14.6월	14.7.1~	14.7월~16.6월	16.7.1~	
기준BIS비율	5.0%	6.0%	7.0%	6.0%	7.0%	

나. 상호금융

-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회계적 개념의 자기자본을 사용
- **신협**의 경우 출자금이 환급 보장되므로 자기자본에서 차감*
 - * '16년 이후 신규 출자금의 환급이 제한됨에 따라 자기자본에 가산될 예정 ('15.7.21 신협법 개정·시행, '16년중 각 신협의 정관변경 예정)

$$c$$
자본비율 = $\frac{\dot{8}$ 자산-총부채-출자금 * +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 \times 100

- * 조합원 탈퇴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함
- □ (예대율) 예탁금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한 **과도한 자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적금·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중을 80% 이하로 제한 (*13.6.25 신설)

다. 여전사

□ (조정자기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을 조정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7% 이상(카드업자 8% 이상) 유지

조정자기 _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 100	≥ 7%
자본비율 ⁼	조정총자산 [*]	× 100	(카드8%)

- * 총자산 (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 +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
- □ (레버리지비율)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12.12.21. 시행)
 - * 신용카드업자 : 자기자본의 6배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 : 자기자본의 10배
- □ (원화유동성비율)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

5 공통

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FLC)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 권역에만 적용
- □ (부도기준) 부도 발생 등의 경우 회수예상가액은 '고정', 초과 금액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
- □ (연체기준) 여신의 연체기간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
- o 대부분의 권역이 **은행 기준과 동일하나, 저축은행**과 **여전사** (기타여신)의 연체기간이 타 권역보다 완화

연체기간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_	은행 여전							
ー	౼	앵				여전			
분	기업 및 가계	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가계	카드	기타여신	보험	금투
정 상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요 주 의	3개월	미만	4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고정	3개월 (회수예	이상 상가액)	4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3개월 이상	3개월 (회수예	이상 상가액)	6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3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3개월 이상 (회수 예상가액)
회수의문	3~12월 미만	3~6월 미만	4개월 이상)	3~12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12월 미만	3개월 이상
추 정 손 실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최저적립율)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을 설정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단위:%)

		은행		저축	상호	여진	<u> </u>		보험		
구	분	기업	가계	은행	금융	개인할부 가계대출	기타	일반	가계	부동산 PF	금투
정	상	0.85 (0.9)*	1	0.5	1	1	0.5	0.5	1	0.9	0.5
요 주	트 의	7	10	2	10	10	1	2	10	7	2
고	정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회수	의문	50	55	75	55	75	75	50	55	50	75
추정	손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건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 (대손준비금) K-IFRS을 적용하는 금융회사는 IFRS 충당금이 최저적립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 적립

K-IFRS 적용여부 및 시기

구분	은행	기초O체	ルミフロ		여전	보험	금투
_	근영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비카드사	되	古干
K-IFRS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상 장 사 : 적용 비상장사 : 선택	적용	적용
적용시기(예정)	'11년	'16년 상 장 사 : 적용 비상장사 : 선택	계획 없음	'11년	'11년	'11년	'12년

다. 법정 적립금 규제

- □ 이익의 10% 이상을 내부유보하여 **과도한 배당 억제** 및 **자본** 충실화 도모
-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및 여전사는** 별도 규제 없이 **상법을 준용**

구분	상법	은행	저축은행	상호	.금융	보험·여전·
一一世	(§458)		시독단병	신협	농·수·산림	금투
법정 적립금	이익배당액의 10%이상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이상 (자본금 규모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이상 (자본금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이상 (출자금 2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별도규정 없음 (상법 준용)